

##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공유재산무상사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4년 10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14일

3. 제안 이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
-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
- 2004. 6. 23 한국토지공사(충북지사)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공유재산을 "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"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### 4. 심의 사항

- 위 치 :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804-1외 2필지  
(오창과학산업단지내)
- 면 적 : 224,254.2㎡(67,837평)
- 용 도 : 연구시설용지
- 기 간 : 3년간 무상(필요시 갱신허가)
- 신청인 :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

#### 4. 검토 의견

- 본건 동의요구한 토지는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계획상 산업시설용지중 연구용지로 지정된 토지로 시험생산을 위한 도시형공장 및 부대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임.
  - 본건 토지는 기초과학연구원 건립부지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03. 12. 15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관리계획상 취득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취득목적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사항임.
  - 현 토지는 04. 6. 11일 토지공사와 180억원으로 매매계약한 후 04. 10. 20일 현재 100억원을 지급하였으며(56%)
  - 충청북도지사가 04. 6. 23 토지공사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락을 받은 사항으로 사용상 문제는 없음
  - 행정재산은 3년이내 사용하가트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재산관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